

의안번호	2209568
의 퇴 인	김소희의원
회 답 일	2025.6.5.
추계번호	25B21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8조 (과태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함. 다만,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제4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68조 (과태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처분권자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과태료 수입 감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
 - 환경부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고,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

위에 대하여 지방환경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총액은 38억원임

- 개정안에 따라 처분권자가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과태료 수입 감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폐기물처리업체의 수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